금융위원회고시 제2020-56호

##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1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 중 "2020년 중"을 "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중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유효기간 등) ① 제26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원화예대율 산정시 100분의 15를 차감한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중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 대출(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)은 이후에도 원화예대율 산정시 동일하게 차감한다.

## < 신구조문 대비표 >

혅 했 개 정 아 제26조(경영지도비율) ① 은행은 제26조(경영지도비율) ① ----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 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2조원 미만인 은 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. 1. • 2. (생 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원화예수금(양도성예금증서 를 제외하고,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을 기금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과 「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 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발 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 청구권부채권 잔액(채권 발행 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 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 며,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 다)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 증서 잔액(원화시장성 양도성

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 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)의 합계액 에 대한 원화대출금(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) 비율 (이하 "원화예대율"이라 한 다).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자금대출(개인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 은 제외)은 100분의 15를 차 감하고, 가계자금대출은 100 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 다. 다만, 2020년 중 신규 취 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 자금대출(주택임대업 · 주택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 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 외한다)은 100분의 15를 차감 하고, 2020년 이후 신규 취급 된 주택임대업 •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 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 산한다. : 100분의 100 이하 가. ~ 라. (생 략) 4. · 5. (생략) ② ~ ⑤ (생 략)

·
, <u>2020년부터 2021년 상</u>
반기 중
<u> </u>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4.·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